

⑪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지역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뉴타운사업을 시행하는 지구안의 제2종전용주거지역의 용적률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교통방송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558
------	-----

2004년 9월 13일
교 통 위 원 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04년 8월 27일, 서울특별시장 제출
- 나. 회부일자 : 2004년 8월 30일
- 다. 상정일자
 - 제151회 임시회 제2차 교통위원회(2004. 9. 7일)
 - 상정,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교통국장 정순구)

가. 제안이유

생활·시정정보 및 건전한 문화·예술을 보급하여 시민의 다양한 정보욕구를 충족시키고 지방자치 실현하기 위하여 교통방송본부의 사업에 텔레비전방송 등을 추가함에 따라 방송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1) 교통방송본부의 사업에 텔레비전 방송채널사용사업과 뉴미디어(인터넷, 지하철TV 등)방송을 추가함에 따라 교통방송 운영의 목적규정을 정비하고, 관련 방송용어를 추가하여 정의함(안 제1조 및 제2조제1호 내지 제4호).
- 2) 방송기본편성표에 대한 결정권자를 종전의 시장에서 시장이 선임한 방송편성책임자로 변경하고, 방송의 편성 및 운영에 대한 책임자의 선임과 책임의 범위를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4조제1항 및 제5조).
- 3) 시장은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프로그램의 수준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프로그램의 제작을 외주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2).
- 4) 시장은 방송법에 의한 방송광고와 뉴미디어를 통한 광고를 편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
- 5) 시장은 교통방송본부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의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 및 민간과의 기술·업무 제휴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3).

다. 참고사항

- 1). 관계법규 : 방송법(별첨)
- 2). 예산조치 : 2004년도 추가경정예산에 54억원 반영 예정임.
- 3). 기 타
 - 가) 신·구 조문 대비표 : 별첨
 - 나) 입법예고 : 입법예고(2004. 8. 11.~ 8. 24.) 결과, 의견 없음.
 - 다)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 협의 결과, 규제사무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임령)

가. 제안배경 및 경과

- 동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시장으로부터 2004. 8. 27 의회에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558호로 2004. 8. 30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동 개정조례안은 교통방송본부의 사업에 CATV 방송을 추가 설립하여 지방자치환경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시민생활정보, 건전한 문화·예술 등 프로그램을 제공하려는 내용임.

나. 세부사항 검토결과

- 본 개정 조례(안)은 서울시에서 2004. 8. 27 조례규칙심의회 의결과 투자심사 완료 후 당일 우리 의회에 제출된 안건임.
- 교통방송본부의 서울시 CATV 설립·운영계획보고에 의하면 향후 CATV 방송설립운영 시 시설비 87억원, 연간운영비 58억원, 인력 50명 증원 등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규모가 큰 사업으로 충분한 사전검토가 필요한데도 그 동안 사업추진과정에서 공청회, 연구용역 등 실제적인 준비부족과 검증결과가 없었음.
- 또한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16조 제3항 16호에 의하면 교통계획과장은 교통방송본부 운영의 지도·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CATV 방송설립과 관련 지도·감독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운영의 지도·감독기관인 교통국의 견해가 전혀 없었음.
- 또한 CATV 사업은 일과성으로 끝나지 않는 계속되는 중대한 신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각계의 충분한 사전검토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결정되어야 할 것이며,
 - 공영방송으로서의 취약점인 시청률 제고 방안
 - 광고수입으로 자립운영 재원 마련 여부
 - 방송 초기 영상 콘텐츠 확보 방안
 - 기존 지역 CATV 방송의 시청률 저하로 인한 경영난 등도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 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방송을 통합·운영.
- 사전 CATV 설립에 관한 계획과 검토가 부족함.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교통방송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통방송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이 조례는 교통정보를 시민에게 신속히 전달함으로써 시민생활편익을 증진하고자”를 “이 조례는 시민에게 교통정보를 신속히 전달하여 시민생활편익을 증진하고, 유익한 생활정보 및 건전한 문화·예술을 보급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로 한다.

제2조제1호 내지 제4호를 각각 제5호 내지 제8호로 하고, 동조에 제1호 내지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TV방송”이라 함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방송채널사용사업에 의한 텔레비전방송을 말한다.